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참조순보험료”란 표준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40조제12항제1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상품
2. 농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장주·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상품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농기계종합보험상품

제4-31조의4 중 “자필서명”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로 한다.

제4-35조의2제3항 중 “서명”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35조의5제4항 중 “서명”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

다.

자. 영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경우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전담창구를 농협중앙회가 대신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제5-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5조의2(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위한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 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의 서식을 갖추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표준해약공제액(이하“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을 “표준해약공제액(이하“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를 “저축성 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7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8조의2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 별표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제7-1조제1호 다목 중 “금액”을 “금액,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12조제2항 중 “제7-82조”를 “제7-72조”로 한다.

제7-45조제7항 중 “표준순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험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할 보험계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45조의2제1항 중 “모집종사자”를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안내서면”을 “안내자료”로 하며, 같은 항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7-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30%(중신연금은 25%)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상품은 7년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

제7-5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7-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기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

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기준과 같다.

제7-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1조의2(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12조제1항 중 “손해보험회사”를 각각 “보험회사”로 한다.

제9-16조제2항제2호 중 “통보”를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9-18조제1항 중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으로 한다.

제9-20조제3항 중 “지정하고”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0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 ①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12월31일까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2 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의 물류, 시책, 교육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4호 다목 중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를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신용연계수익증권(Credit Linked Fund)”으로 한다.

별표 14 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부가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부가된 금액을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표준계약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별지 제12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5항, 제4-14조제5항, 제4-39조제2항 및 제4항, 제7-1조, 제7-81조의2, 제10-5조,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5-15조의2, 제7-51조,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5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는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③ 농협은행이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제4-39조제1항 가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모집을 하게할 수 있다.

④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제1-2조제4호에 따른 저

축성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7-71조, 별표 17 제1호 및 제 2호, 별표 7-2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 도래 시마다 한도초과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7. (생략)</p> <p><u><신설></u></p>	<p>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7. (현행과 같음)</p> <p><u>18. “참조순보험료”란 표준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u></p>
<p>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 ⑥ (생략)</p> <p><u><신설></u></p>	<p>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u></p>
<p>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 ③ (생략)</p> <p>④ 협회의 장은 <u>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p>	<p>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협회의 장은 <u>제3항에</u>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p>

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체결) ① ~ ③ (생략)

④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 ④ (생략)

<신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체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 ④ (생략)

<신설>

제4-31조의4(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필

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상품

2. 농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장주·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상품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농기계종합보험상품

제4-31조의4(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명

서명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② (생략)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 ①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항목별로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표준 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확인방법및절차등) ①

~ ③ (생략)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 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지행위

가. ~ 나. (생략)

2. 준수사항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 날인, 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 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지행위

가. ~ 나. (생략)

2. 준수사항

가. ~ 아. (생략)

<신설>

④ (생략)

제5-14(자산운용의 특례) ①·②
(생략)

③ 투자자가 보험회사인 공모단
독집합투자지구에 대하여는 제1
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
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
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

가. ~ 아. (생략)

자. 영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조합의 경우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전담창구
를 농협중앙회가 대신하여 운
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
약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
자방식으로 알릴 것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14(자산운용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5-15조의2(자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위한 채무보
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
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
12호의 서식을 갖추어 감독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
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
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

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표준해약공제액의 7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

<신 설>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나. (생략)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한다)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① (생략)

② 재보험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제7-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액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 별표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 그 밖에 감독장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보험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제7-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⑥ (생략)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 및 금리확정형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이 조에서 “연간보험료”라 한다)를 기재한다.

1. 보험료지수: (보험료총액 ÷ 표준순보험료총액) × 100

⑧ (생략)

<신설>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 ⑥ (생략)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 및 금리확정형저축성보험의 가입설계서와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이 조에서 “연간보험료”라 한다)를 기재한다.

1. 보험료지수: (보험료총액 ÷ 참조순보험료총액) × 100

⑧ (현행과 같음)

⑨ 보험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할 보험계리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45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수령 기준) ①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등의 자료(이하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제 1항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서면을 교부할 것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과 자필서명이 필요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것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6 제4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제 1항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자료를 교부할 것

<삭제>

제7-51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6 제4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7-52조(신고예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1. ~ 3. (좌동)

4.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30%(종신연금은 25%)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상품은 7년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

제7-52조(신고예외) 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별표17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손해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

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는 별표17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기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 기준과 같다.

제7-81조의2(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

해사정사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생략)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4.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

사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

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삭제

② (생략)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고,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별표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
수기준(제4-39조제2항제2호아목
관련)

1. (생략)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
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
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
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
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
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
리점등이 부담한다. <단서 신
설>

나.·다. (생략)

3. ~ 7. (생략)

별표9 보험회사의 과생금융 거래기

④·⑤ (현행과 같음)

별표7-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
수기준(제4-39조제2항제2호아목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
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
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
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
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
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
리점등이 부담한다. 다만, 법
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
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
합의 물류, 시책, 교육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별표 9 보험회사의 과생금융 거래

준(제5-2조관련)

1. (생략)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3. (생략)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나. (생략)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기준(제5-2조관련)

1. (현행과 같음)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원화표시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 Linked Deposit), 원화표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원화표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 원화표시 주가연계수익증권(Equity Linked Fund), 원화표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원화표시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및 원화표시 신용연계수익증권(Credit

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마. (생략)

5. (생략)

[별표 14] 표준해양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양공제액(제7-66조관련)

표준해양공제액
연납순보험료의 5%× 해양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4. (생략)

<신설>

Linked Fund)에 대한 투자. 다만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증권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거목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은 제외한다.

라.·마.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 14] 표준해양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양공제액(제7-66조관련)

표준해양공제액
연납순보험료의 5%× 해양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4. (현행과 같음)

5.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추가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추가된 금액을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양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별지 제12호>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보고

1. 보험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2.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 ⁴⁾
상 호	대표이사	업종 ¹⁾	신용등급 ²⁾	채무보증기간	채무보증 약정금액 ³⁾	
				총계		

주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주2) 신용평가기관 S&P 또는 AM Best에서 신고일 직전 1년 최근일 평가받은 신용등급 기재

주3)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 : 채무보증계약의 예상'총보유금액 - 순보유금액' 합계액을 백만원로

기재

3.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부실화 가정시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근 분기말(a)	자회사 부실화 가정시	차이 (B-A)
지급여력금액(A)		주)	
지급여력기준금액(B)			
지급여력비율(A/B)			

주)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금액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을 차감한 금액

4.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점검표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채무건전성 기준 ¹⁾	총자산 ²⁾ (A)	채무보증 운영한도 ³⁾ (B)	채무보증약정금액 (C)	한도여력 (B-C)
%				

주1)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

주2) 직전월 말 보험회사의 총자산

주3) 채무보증 운영한도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주4) 총자산, 채무보증 운영한도,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요건

회사명	본점소재지	보험회사의 지분율
		%
		%

【첨부서류】

1.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약정서 사본
2. 외국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한 경우 해당 감독당국의 확인서류 등 입증서류